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필요한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

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개선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등)

국내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범위, 요청 자료 정보의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적 개선(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

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 2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해야 하고, 수거증 발급 시 피수거자가 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3제2항”을 “법 제31조의3제1항”으로, “확인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3제4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영문 영업허가증 등의 발급)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영문(이하 “영문 영업허가증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 영업허가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5서식의 영문 영업허가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제6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정보의 조사·분석 및 연구·평가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3.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추진
4.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점검·평가

5. 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 및 기술지원

6.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요청 자료·정보의 보유·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요청 자료·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출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료·정보의 제공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급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별표 12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 2)를 5)로 하며, 같은 목 1)을 2)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을 “1개월”로 한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동일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동일한 경우: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

나. 동일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밀봉이나 냉동으로 검사항목이 달라진 경우로 한정한다): 검사항목이 더 많은 1개 이상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

3의2. 자가품질검사는 제6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해당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 1회 이상 검사를 실시(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표12 제6호가목 2)를 5)로 하며, 같은 목 1)을 2)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한다.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추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분말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만 해당한다), 잼류, 다류(침출차만 해당한다), 조미식품(실고추,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만 해당한다), 주류: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기타 코코아가공품만 해당한다), 초콜릿류, 당류(당류가공품만 해당한다), 음료류(엑상차, 고행차 및 커피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연육, 어육반제품, 젓갈류, 건포류,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한천,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목류, 면류, 조미식품(회식초산, 카레(커리)분,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천일염, 태움·용융소금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벌꿀 및 화분가공품(벌꿀만 해당한다), 기타식품류(기타가공품만 해당한다),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

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7 제7호허목 중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휴게음식점영업 및”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으로 한다.

별표 23 I 제15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인 경우. 다만, 국제표준바코드가 표시된 제품으로 인한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I 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로서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차단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한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별표 26 제1호마목 중 “등록증)”을 “등록증, 영문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7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자목의 해당하는 경우(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차단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경고	60	90
---	----	----	----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별지 제4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1호의4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8조의6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1일

제2조(수거·검사 결과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종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6호가목1)·2)·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주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기간 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영업자는 별표 12 제6호가목1)·2)·4)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 호

수 거 (압 류) 종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가공업 소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 생산·포장업소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 업소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월	일 시 분
제조연월일 또는 생산연월(포장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통보 요청	☐ 요청	☐ 미요청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식품위생법」 제22조·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87조제1항에 따라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수거검사 결과통보 요청 시 검사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수거자 (압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13 -
성명: (서명 또는 인)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Business Permission

- Name of Business Establishment :
- Address :
- Business Premises Area :
- Name of Representative : (Date of Birth :)
- Type of Business : Food irradiation and treatment business
- Permission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od irradiation and treatment business is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1)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40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DD MM YYYY

Head of 00 Regional Office of
Food and Drug Safety

Official
Seal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Record of Changes		
Date	Details	Title and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Signature or seal)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Business Permission

- Name of Business Establishment :
- Address :
- Business Premises Area :
- Name of Representative : (Date of Birth :)
- Type of Business : (Form of Business :)
- Permission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od service business is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1)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40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DD MM YYYY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
Head of a *Si/Gun/Gu*

Official
Seal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illegible]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Business Report

- Name of Representative : (Date of Birth : - xxxxxxxx)
- Name of Business Establishment :
- Address :
- Business Premises Area :
- Type of Business :
- Type of Food :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usiness is re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4)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42 (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DD MM YYYY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
 Head of a *Si/Gun/Gu*

Official
Seal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Record of Changes

[illegible]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Business Report

- Name of Representative : (Date of Birth : -xxxxxxx)
- Name of Business Establishment :
- Address :
- Business Premises Area : Indoors [m²] Outdoors [m²]
- Type of Business : (Form of Business :)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usiness is re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4)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42 (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DD MM YYYY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
 Head of a *Si/Gun/Gu*

Official
Seal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illegible]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업종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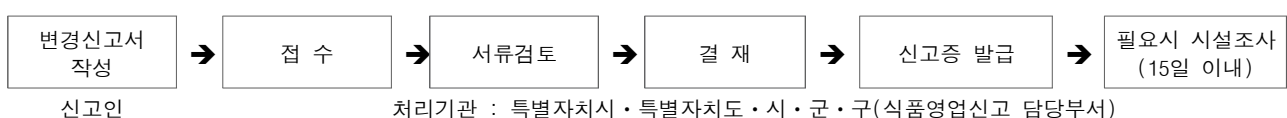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업종(단, 영 제21조제8호의 가목 휴게음식점영업, 나목 일반음식점영업, 바목 제과점영업에 한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22**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나 업종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바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Name of Representative : (Date of Birth :)
- Name of Business Establishment :
- Address :
- Business Premises Area :
- Type of Business : (Form of Business :)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usiness is registered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5)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43-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DD MM YYYY

Head of Regional Office of Food and Drug Safety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
Head of a *Si/Gun/Gu*

Official
Seal

[illegible]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			
	주소			
신청업소	영업소명(한글)	영업소명(영문)		
	대표자(한글)	대표자(영문)		
	소재지(한글)			
	소재지(영문)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 영업허가증 [] 영업등록증 [] 영업신고증			
신청사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의 영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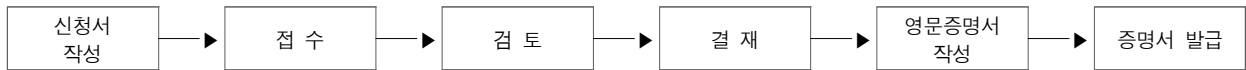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시 2,000원

처리절차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생 략)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 다.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해야 하고, 수거증 발급 시 피수거자가 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 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문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 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 에 따른 <u>확인검사 결과</u> 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 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 ----- ----- 법 제31조의3제1항- ----- <u>자가품질검사 결과</u>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② 법 제31조3제4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7. (생 략)

③ ~ ⑪ (생 략)

<신 설>

-----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
업 -----

6.·7.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영문 영업허가증 등의 발급)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영문(이하 “영문 영업허가증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 영업허가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8호

<신 설>

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5서식의 영문 영업허가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제6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정보의 조사·분석 및 연구·평가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3.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추진
4.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점검·평가
5. 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 및 기술지원
6.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4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요청 자료·정보의 보유·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요청 자료·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출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료·정보의 제공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48조의6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
급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